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

무상사용허가 동의안

3. 안 건 요 지: 별 첨

4. 검 토 의 견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1월 29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한 봉 전

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

본 동의안은 2007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지역공예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하여 대전역 지하상가에 설치운영중인 『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』의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지역공예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특화문화상품 개발 장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 허가코자 의회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 적 : 지역공예상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

활성화 도모

나. 위 치 :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(대전역 지하상가 내)

다. 규 모: 10개 점포(99.84m² / 약 30평)

라. 사용기간 : 3년

마. 운 영 자 : 대전공예협동조합

3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지난 84년 이후 무상으로 사용되어온 공예품전시판매장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 이내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토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'99. 4. 30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이 무상사용 허가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되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관련법규 연찬 소홀 등 미흡한 업무추진으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